
1381 해외인증자료



무단 도용 배포 금지

(문의)

유럽연합 GPSD(일반제품안전지침) 및 GPSR(일반제품안전규정)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에는 해외 원문 문서를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해외원문 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 내 링크 또는 문서 하단 * 자료 출처의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U GPSD(일반제품안전지침) → GPSR(일반제품안전규정)

EU의 일반제품안전지침(GPSD)은 **2024년 12월 13일부로 일반제품안전규정(GPSR)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일반제품안전지침(GPSD)은 모든 제품이 고안된 용도에 따라 사용되어야 할 것과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U GPSD(일반제품안전지침)

▶ 일반제품안전지침 (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 GPSD) - Directive 2001/95/EC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01L0095-20100101>

유럽연합(EU)에서는 **일반제품안전지침(GPSD)**을 통해, 모든 소비자 제품의 일반적인 **안전성을 보증**할 의무를 제품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침(Directive)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은 **일반 소비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른 지침과 달리 CE마킹, DoC 또는 인증을 완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3자 시험소에서의 시험도 요구되지 않으며 자체 평가가 가능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시장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적발 및 관리하고 있으며, 제조자가 유럽 내 업체가 아닌 경우 EU내에 지정된 **대리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이 의무가 적용되므로 수출 시 유럽 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자 및 유통업자는 위해한 제품이 발견되면 즉시 국가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 포함될 사항은 문제가 되는 제품, 문제의 위험성, 추적에 필요한 정보, 취한 조치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출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인증은 없으나, **일반제품안전지침(GPSD)**을 준수하기 위해 제조자는 테스트를 통해 제품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문서를 준비해야 하며, 이때 유럽연합 표준을 적용하여 테스트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관련 표준은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관련 키워드검색, 관련규격 열람/구매 가능)

<https://standards.cencenelec.eu/dyn/www/f?p=CEN:105::RESET:::>

다만, 일반제품안전지침(GPSD)은 모든 품목의 제품에 적용되는 EN이나 ISO규격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조자나 수입업자는 여전히 제품 시판 전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인증기관이나 시험기관을 통해 관련 규격 시험 후, 해당 규격에 대한 제품 적합성을 보여주는 시험성적서를 구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U GPSR(일반제품안전규정)

EU의 일반제품안전지침(GPSD)은 **2024년 12월 13일부로 일반제품안전규정(GPSR)**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이는 일반제품안전지침(GPSD)을 보완한 **규정(Regulation)**이며, 발효 즉시 모든 회원국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요소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화 표준제품 (Harmonised Standard Produ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에서 유통되는 비 식품 제품의 2/3를 차지하는 제품 분류 - 전기·전자기기, 기계부품, 승강기, 의료기기, 장난감, 자동차, 화학약품 등 - CE 인증을 통해 EU 공통 안전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비-조화 표준제품 (Non-harmonised standard Produ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화 표준제품 외 나머지 1/3을 차지하는 제품 분류 -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소비재로 의류 및 신발, 생활용품 등이 해당 (*단 작업복, 안전화 등 개인보호장비는 조화 표준 제품에 해당) - 기존 회원국별 안전지침(GPSD)이 적용됐으나 안전규정(GPSR) 개정을 통해 EU 공통으로 GPSR이 적용될 예정
<참고 : EU의 조화 표준제품과 비-조화 표준제품>	

모든 제조사의 EU 법적대리인 지정 의무 및 제조사 책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제조사는 EU 역내 법적대리인 지정 의무 - 제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제조사는 Safety Gate를 통해 각 회원 당국에 통보(제품 사용으로 인한 사망 및 건강과 안전에 영구적, 일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부상, 기타 신체 손상, 질병 및 만성적인 건강 문제 등 포함) - EU 최초로 불법 제품에 대한 차단 유지(stay-down) 조항을 적용 (안전 규정 미준수제품 적발 시 시장에서 회수 및 동일한 모든 제품의 유통 및 판매 금지)
제품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확대	<p>모든 유통 제품의 제조사 및 수입, 유통업체는 제품 패키지 또는 자사의 웹사이트에 정보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사의 정보(상호, 상표, 주소) 및 제품 정보(제품의 종류) - 제품에 대한 주의 사항 및 안전 관련 정보 - 이메일 주소와 소비자 상담 서비스 등 관련 정보
온라인 플랫폼 의무 규정	온라인 플랫폼은 위험한 제품의 통보를 받은 후 2일 내 제품을 해당 플랫폼에서 철회 의무 및 소비자의 불만 표시가 있을 시 3일 내 확인 및 대응
리콜 절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경우 연락처를 기입, 추후 해당 제품에 리콜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정보를 받게 됨 - 제조사는 리콜된 제품에 대한 수리, 교체 또는 환불 등 두 가지 이상의 구제권리(right to remedy)를 제공해야 함

감시 당국의 역할 강화	관할 당국은 제품의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다수의 웹사이트에서 동시 다발적인 조사를 실행, 잠재적 위험 제품을 식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 가능
--------------	---

GPSR(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현행 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 및 Food Imitating Product Directive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GPSR은 EU 시장의 모든 소비자 제품이 안전할 것을 요구하며 기업이 이를 보장해야 하는 특정 의무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식품 제품 및 모든 판매 채널에 적용되며, 다른 EU 법률에서 규제하지 않는 제품 또는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 일반제품안전규정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GPSR) - Regulation (EU) 2023/988
<https://eur-lex.europa.eu/eli/reg/2023/988>

▶ GPSR의 적용 대상

The new regulation applies to products placed or made available on the European market, whether new, used, repaired, or reconditioned, and it covers every type of product, whether or not it is interconnected to other items, supplied, or made available, which is intended for consumers or is likely, under reasonably foreseeable conditions, to be used by consumers even if not intended for them.

새로운 규정은 신제품, 중고품, 수리품, 수리품에 관계없이 유럽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 가능한 제품에 적용되며, 다른 품목과 상호 연결되어 있거나, 공급되거나,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조건에서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유형의 제품에 적용됩니다.

▶ GPSR 적용 외

The EU GPSR does not apply to:

-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or veterinary use(인체 또는 수의학적 사용을 위한 의약품)
- Food(음식)
- Feed(먹이(사료))
- Living plants and animal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s in contained use, as well as products of plants and animals relating directly to their future reproduction(살아있는 동식물, 유전자 변형 생물체, 유전자 변형 미생물 등이 격리되어 사용되며, 동식물의 산물도 이들의 미래 번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
- Animal by-products and derived products(동물 부산물 및 파생 제품)
- Plant protection products(식물 보호 제품)
- Equipment on which consumers ride or travel where that equipment is directly operated by a service provider within the context of a transport service provided to consumers and is not operated by the consumers themselves(소비자가 타거나 여행하는 장비, 해당 장비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운송 서비스의 맥락 내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운영하며 소비자 자신이 운영하지 않는 장비)
- Aircraft and their parts, including remote control, used in military, customs, police, search & rescue, firefighting, border control, coast guard and similar activities(군대, 세관, 경찰, 수색 및 구조, 소방, 국경 통제, 해안 경비대 및 이와 유사한 활동에 사용되는 원격 제어를 포함한 항공기 및 그 부품)
- Antiques(골동품)

※출처

- European Commission : What is the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
https://commission.europa.eu/business-economy-euro/doing-business-eu/eu-product-safety-and-labelling/product-safety/general-product-safety-regulation_en
- UL Solution : Europe: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GPSR) EU/2023/988, Replacing the 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 (GPSD)
<https://www.ul.com/resources/europe-general-product-safety-regulation-gpsr-eu2023988-replacing-general-product-safety>
- KOTRA : EU, 제품 안전규제 강화 위해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개정(2023.01.02.)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99744
- EU :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https://commission.europa.eu/business-economy-euro/product-safety-and-requirements/product-safety/general-product-safety-regulation_en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해당 자료는 제품 분류 및 품목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및 절차로서, 세부 품목에 따라 별도의 절차 및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수출에 필요한 국가별, 제품별로 적용되는 강제 규제 또는 특정 인증에 대하여 해외정보자료를 무료로 조사하여 드립니다.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자료실에 첨부되어있는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파일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 드립니다.

문의처

위 내용은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로써 최신 현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유럽 현지의 수입업체나 현지 KOTRA 무역관 또는 컨설팅 업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나라별로 통용되고 있으나 비강제 인증의 성격을 띄고 있는 인증도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받거나 현지 수입업자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제조자가 현지 시장동향과 주요 타겟층 설정 및 소비자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지 동향이나 업계 요구사항, 인증 신뢰도, 소비자 선호도 같은 최신 현지정보는 해당 지역 업계 및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KOTRA 현지무역관에 수출관련 무역정보 및 시장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KOTRA 유럽지역본부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98/ovrskbc/selectOvrskbcDetail.do?deptCd=9500>
스페인 마드리드 무역관, 독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프랑스 파리 무역관, 이탈리아 밀라노 무역관 등등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http://eu.kita.net/>

- 한국무역협회 Trade Pro 무역상담 1566-5114 http://tradesos.kita.net/trade_sos/tradesos.jsp

유의사항

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술·학습 목적의 문의, 해당조사를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컨설팅, 대행기관 등으로부터의 문의는 대응이 불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실무(비용, 소요기간)와 관련된 문의는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정보센터에서는 대행기관(컨설팅회사)을 추천해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대행기관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전담대응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인증분야(CE, NMPA, FDA, CPNP, NRTL, FCC, IECEE, PSE 및 ESG·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유선·모바일·온라인 등을 통해 상시 문의사항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예정)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주요 인증 분야 (유럽 CE, CPNP, 중국 NMPA, 미국 FDA, NRTL, FCC, IECEE, PSE 및 ESG·탄소중립)에 대한 문의 사항 상담 및 교육 지원
3. 상담절차 : 상담 채널 (유선/모바일/온라인) → 주요 인증 분야 문의 → 애로 해결 지원 (유선/1:1상담/게시판 답변)



4. 문의처
 - 유선 ARS 대표번호 : 1577-9911
 -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검색 : 해외규격인증 전담대응반
 - 온라인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전담대응반
(<https://www.smes.go.kr/globalcert/user/exclusiveCharge/exclusiveChargeOnaList.do>)

5. 운영방법
 - 관리기관 내 대응 채널(유선-ARS, 모바일-카카오톡 채널, 온라인-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상시 애로 접수·상담 운영
 - 미 해결시 방문형 컨설팅과 연계하여 인증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한 심층 지원
 - 중소기업 인증 담당자의 인증획득 성공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인증 교육 실시

※ 주의 !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해외원문문서의 번역 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상기 안내 사항은 각 항목 하단에 링크된 참고와 출처 페이지의 일부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의 자료 참고,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소요 기간은 귀사 제품에 적용되는 시험 항목, 시험 기관, 귀사의 관련 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연락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이의제기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

